

「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요약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제2022-41호, 2022.7.20.)

2. 개정사유

- ① 담보제공 생략 대상 중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고시 변경 반영
- ②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세관확인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가능 세관을 확대하여 민원인 불편해소
- ③ 코로나19 등으로 기업경영에 피해를 입은 업체 등에 관세행정 세정지원을 위한 담보제공 요구 생략 근거 마련

3. 주요 개정내용

- ①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고시 변경 내용 반영(제4조제2항)
 -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1호
→ 「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3호
- ②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지 세관 확대(제8조제1항)
 -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, 변경 전·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
- ③ 납부기한의 연장(분할납부)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시 담보생략 근거 마련(제12조제5항)

4. 전문 및 신규 조문 대비표 : “붙임” 참조

5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
6. 시행일자 : 2022. 7. 20.